2019년 지급서비스법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두 개의 구법에서 하나의 활동 기반 법률로

2020년 이전 싱가포르의 지급 규제는 두 개의 법률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환전 및 송금업법(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es Act)은 환전업자와 송금 대리인을 규율했고, 지급시스템(감독)법(Payment Systems (Oversight) Act)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시스템과 선불지급수단(stored value facilities)에 대한 권한을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 부여했습니다. 어느 법률도 가상화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PSA)은 두 법률을 폐지하고 단일한 체계로 대체했습니다. MAS는 이 체계를 활동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회사는 사업의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1]

지급서비스법안은 2018년 11월 19일 의회에 제출되었고 2019년 1월 14일 제2독회와 제3독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2019년 2월 11일 2019년 법률 제2호(Act 2 of 2019)로 재가를 받았고 2020년 1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제2독회 연설은 MAS 담당 장관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을 대신하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여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옹예쿵(Ong Ye Kung)이 했습니다. 그는 이 법을 기술로 변모한 지급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새로운 제공자와 새로운 형태의 가치가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2]

이 법은 7가지 지급서비스를 규율합니다. 계좌 발행, 국내 송금, 국경 간 송금, 가맹점 매입, 전자화폐 발행,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 환전입니다.[3] 이 목록은 가상화폐 거래를 송금업소나 카드 매입사와 같은 법률 안에 두었습니다. 이는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2019년의 입법자에게 비트코인 같은 토큰의 경제적 기능은 공식 통화체계 밖에 있는 지급수단의 기능이었고, 가장 중요한 위험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었습니다.

디지털 지급 토큰

이 법은 디지털 지급 토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단위로 표시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서, 어떤 통화로도 표시되지 않고 발행자가 어떤 통화에도 연동시키지 않은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대가 또는 채무 변제를 위한 지급으로 공중 또는 공중의 일부가 받아들이는 교환수단이거나 그러한 교환수단으로 설계된 것이고,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4] 이 정의는 비트코인, 이더 및 교환수단으로 유통되는 그 밖의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포괄합니다. 주식, 집합투자기구의 지분 또는 사채를 표창하는 토큰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이 규율하는 자본시장상품이기 때문이며, 그 구조는 제E편 제I장에서 설명합니다.

이 법의 최초 버전에서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한 토큰의 거래와 그 교환의 중개입니다. 고객을 상대로 자기계산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판 회사나 고객들이 서로 토큰을 교환하는 플랫폼을 운영한 회사는 라이선스가 필요했습니다. 토큰을 보관만 하거나 전송만 한 회사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은 곧 인식되었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후속 개정으로 메워졌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세 가지 라이선스 유형

이 법은 세 가지 라이선스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환전 라이선스는 환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 지급기관(SPI) 라이선스는 거래량과 전자화폐 잔액이 정해진 기준 미만으로 유지되는 한 7가지 서비스를 어떤 조합으로든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주요 지급기관(MPI)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이 경우 고객 자금의 보호를 포함하여 더 엄격한 의무가 따릅니다. 제2독회 연설은 표준 지급기관 제도를 일종의 상설 샌드박스로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서 소규모 회사는 규제의 전체 부담을 지기 전에 더 가벼운 규칙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5]

표준 지급기관의 기준은 어느 한 지급서비스에 대해 월 거래액 300만 싱가포르달러, 둘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 600만 달러(계좌 발행과 환전은 계산에서 제외), 그리고 일일 전자화폐 잔액 500만 달러로 정해졌습니다.[6]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수치를 넘었기 때문에 주요 지급기관 라이선스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유형은 토큰의 성격이나 거래소의 사업 모델과 관계없이 사업 규모와 제공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목적으로서의 자금세탁 방지

이 법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옹예쿵은 제2독회 연설에서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가 "상당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하고, 싱가포르에서 거래 또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싱가포르가 그러한 서비스에 관한 체계를 도입한 최초의 금융규제 당국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7]

그 요건은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MAS 고시에 규정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은행업에서 알려진 고객확인, 기록 보존,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적용했습니다.[8]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자체 기준을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로 확대하여, 이들이 라이선스를 받거나 등록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금조달 위험에 대해 규제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9] 그보다 5개월 앞서 통과된 싱가포르의 법률은 그 기준의 상당 부분을 선취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보다 넓은 자금세탁 통제 체계는 제H편 제III장에서 검토합니다.

최초 형태의 이 법이 하지 않은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이 법은 토큰 자체의 건전성을 규율하지 않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MAS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며 라이선스가 어떤 토큰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거듭 공중에게 경고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MAS는 라이선스 보유자와 그 밖의 제공자가 싱가포르의 일반 공중에게 서비스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10] 이 지침은 피해야 할 경로로 공공장소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명시했고, 이로써 대중교통과 공공 스크린에서 가상자산 광고가 사라졌습니다.[11]

라이선스 대기열

라이선스 절차는 느리고 선별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활동하고 있던 회사는 신청이 심사되는 동안 경과적 면제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은 MAS가 이 법에 따라 480건이 넘는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으며, 그중 약 170건, 즉 약 35%가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신청 중 30건, 즉 18%는 당국과의 협의 후 철회되었고, 2건은 거부되었으며,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아직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약 90개 제공자가 면제에 따라 영업하고 있었습니다.[12]

이 수치는 의도된 정책을 보여 줍니다. MAS는 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자의 소유 구조, 지배구조, 통제 및 사업 계획을 심층적으로 심사했고, 많은 신청자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가상자산 회사에 대한 최초의 라이선스와 원칙적 승인은 2021년 말부터 이어졌고, 2020년대 중반에는 은행 자회사, 글로벌 거래소, 전문 수탁기관을 포함하여 수십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개 회사가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에 관한 주요 지급기관 라이선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13] 글로벌 거래소에게 싱가포르 라이선스는 다른 곳의 은행 및 규제당국과의 협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품질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과 2024년 시행

최초 법률의 공백은 의회가 2021년 1월에 통과시킨 2021년 지급서비스(개정)법(Payment Services (Amendment) Act 2021)으로 해소되었습니다. 그 시행은 MAS가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과 고시를 공표한 2024년까지 늦추어졌습니다. 2024년 4월 2일 MAS는 2024년 4월 4일부터 세 가지 활동이 추가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지급 토큰에 대한 수탁 서비스의 제공, 제공자가 자금이나 토큰을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토큰의 이전 및 교환을 중개하는 행위, 그리고 자금이 싱가포르에서 수령되거나 수취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경 간 송금을 중개하는 행위입니다.[14]

이 개정은 또한 MAS에 자금세탁에 관한 요건과 함께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에 관한 요건을 부과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새로 규제 대상이 된 활동을 이미 수행하던 회사는 30일 이내에 당국에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하며, 9개월 이내에 사업과 자금세탁 방지 통제에 관한 외부 감사인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15] 이러한 변화로 자금세탁 방지 수단으로 출발한 법률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완전한 영업행위 규제 체계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시급하게 만든 사건들이 다음 절의 주제입니다.

주

1. Mondo Vision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Payment Services Act Comes Into Force”, 2020년 1월 28일(MAS 보도자료 전재): 이 법은 “adopts an activity-based licensing framework”; 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es Act 및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는 폐지됨. ↩
2. Wikipedia, “Payment Services Act 2019”(2026년 11월 최종 접속): 법안 제48/2018호, 2018년 11월 19일 제출, 2019년 1월 14일 제2독회 및 제3독회,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019년 2월 11일 재가, 2019년 법률 제2호, 2020년 1월 28일 시행. MAS, “Payment Services Bill”, Second Reading Speech by Mr Ong Ye Kung, Minister for Education, on behalf of Mr Tharman Shanmugaratnam, 2019년 1월 14일, mas.gov.sg. ↩

3. Wikipedia, “Payment Services Act 2019”(2026년 11월 최종 접속), 7가지 규제 대상 활동 열거. ↩

4. Payment Services Act 2019, s. 2(1), “digital payment token”의 정의, First Schedule Part 2와 함께. ↩

5. MAS, “Payment Services Bill”, Second Reading Speech, 2019년 1월 14일: 환전 라이선스 보유자, 표준 지급기관 및 주요 지급기관; 표준 지급기관은 연설에서 “permanent sandbox”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보다 가볍게 규제됨; 규제 조치는 “tailored to the scope of services being offered by any provider”. ↩

6. MAS, “Licensing for Payment Service Providers”, mas.gov.sg(regulation/payments): “S$3 million monthly transactions for any payment service”, “S$6 million monthly transactions for two or more payment services”(전자화폐 계좌 발행 및 환전 제외) 및 “S$5 million of daily outstanding e-money”의 기준, Payment Services Act 2019 s. 6(5) 참조. ↩

7. MAS, “Payment Services Bill”, Second Reading Speech, 2019년 1월 14일: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는 “carry significan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risks”; 싱가포르의 모든 DPT 거래 또는 교환 제공자는 AML/CFT 요건을 충족해야 함; 또한 이 법안으로 싱가포르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또는 교환 서비스로 이해되는 DPT 서비스에 관한 체계를 도입한 최초의 금융규제당국 중 하나가 됨. ↩

8. MAS Notice PSN02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Holders of Payment Services Licences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2019년 발표 후 여러 차례 개정. ↩

9. MAS, “Explanatory Brief for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2022”, 2022년 2월 14일: 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관한 강화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기준을 채택하여, 이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규제를 받고 설립된 곳에서 라이선스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요구함. ↩

10. MAS, Guidelines on Provision of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to the Public (PS-G02), 2022년 1월 17일, mas.gov.sg: DPT 서비스 제공자는 “should not promote their DPT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in Singapore”. ↩

11. PS-G02, 공공장소에서의 마케팅 및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같은 제3자를 통한 마케팅에 관하여. ↩

12. MAS, “Reply to Parliamentary Question on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 Applicants”, 2021년 7월 26일(셍캉 GRC 의원 Louis Chua Kheng Wee의 질의): 신청 480건 이상, 그중 약 170건(약 35%)이 DPT 서비스; 30건(18%) 철회; 2건 거부; 라이선스 미발급; 약 90개 DPT 서비스 제공자가 면제에 따라 영업. ↩

13. MAS Financial Institutions Directory(eservices.mas.gov.sg/fid), 디지털 지급토큰 서비스에 관한 라이선스를 받은 주요 지급기관 목록. ↩

14. Allen & Gledhill, “MAS expands scope of regulated payment services, amends ongoing compliance requirements and introduces user protection requirements for DPT service providers under Payment Services Act 2019”, 2024년 4월, Payment Services (Amendment) Act 2021 (Commencement) Notification 2024 (S 285/2024), Saving and Transitional Provisions Regulations 2024 (S 286/2024) 및 Payment Services (Amendment) Regulations 2024 (S 287/2024) 열거. MAS, 보도자료 “MAS Expands Scope of Regulated Payment Services”, 2024년 4월 2일: 세 가지 활동이 추가로 규제 대상이 되며, 개정은 2024년 4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15. 위의 글: 2024년 4월 4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6개월 이내 라이선스 신청, 9개월 이내 외부 감사인의 확인서; MAS는 DPT 서비스 제공자에게 AML/CFT,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